

취·창업지원센터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취·창업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6.9.7.개정),(2020.10.6.개정),(2023.08.02.개정)

제2조(소재) 취·창업지원센터 운영 장소는 루터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대학본부 내에 둔다. (2016.9.7.개정),(2020.10.6.개정),(2023.08.02.개정)

제3조(설립 목적) 취·창업지원센터는 본교 재학생의 취·창업의지를 고취하고 조력 전문직과 유관 분야의 취·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2016.9.7.개정),(2020.10.6.개정),(2023.08.02.개정)

제4조(사업) 취·창업지원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2016.9.7.개정),(2020.10.6.개정),(2023.08.02.개정)

1.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2016.9.7.개정)
2. 재학생 및 졸업생의 취·창업 지원
3.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성과분석 및 환류 (2018. 02.02. 개정)
4.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및 사업 (2018. 02.02. 개정)
5. 산업체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및 사업 (2018. 02.02. 개정)
6. 그 외 취·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한 사업 (2016.9.7.개정),(2020.10.6.개정),(2023.08.02.개정)

제 2 장 조직 및 운영

제5조(조직 구성) 취·창업지원센터는 기획조정처 산하에 두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직을 둔다. (2016.9.7.개정),(2017.8.31.개정),(2020.10.6.개정),(2023.08.02.개정)

1. 센터장(책임자) 1인 (2016.9.7.개정)
2. 운영위원(센터장 포함) 5인
3. 기획조정처 (2016.9.7.신설),(2020.10.6.개정),(2023.08.02.개정)
4. 직원 1인(학사급 인력 이상) (2016.9.7.개정),(2023.08.02.개정)

제6조(역할) ① 센터장은 취·창업지원센터를 대표하고, 운영전반을 관리 감독한다.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관련 전문성을 가진 책임자로 총장이 임명한다. (2016.9.7.개정),(2016.12.30.개정),(2020.10.6.개정),(2023.08.02.개정)

② 운영위원은 취·창업지원센터 운영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기구 역할을 한다. 운영위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교내의 각 전공 및 교양 전공 교수를 포함할 수 있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2016.9.7.개정),(2020.2.25.개정),(2020.10.6.개정),(2023.08.02.개정)

③ **(삭제)** (2016.9.7.신설),(2020.10.6.개정),(2023.08.02.삭제)

④ 직원은 센터장의 지시를 받아 취·창업지원센터의 실무 및 연구 업무를 관장한다. 직원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직원 인사 규정을 준용한다. (2016.9.7.개정),(2016.12.30.개정),(2020.10.6.개정),(2023.08.02.개정)

제 3 장 재 정

제7조(재원) 취·창업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2016.9.7.개정),(2020.10.6.개정),(2023.08.02.개정)

1. 교비 예산
2.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기부금 및 기타 수익금

제8조(회계연도) 취·창업지원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2016.9.7.개정),(2020.10.6.개정),(2023.08.02.개정)

제9조(예산과 결산) ①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16.9.7.개정)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내에 전년도 사업보고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16.9.7.개정)

제 4 장 기 타

제10조(규정 개정 등) ① 취·창업지원센터 규정 개정, 해산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16.9.7.개정),(2020.10.6.개정),(2023.08.02.개정)

② 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과 내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016.9.7.개정)

제11조(운영세칙) 취·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2016.9.7.개정),(2019.9.4.개정),(2020.10.6.개정),(2023.08.02.개정)

① 센터장은 비교과과정 운영위원회 규정 제 6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12월 에 성과 분석을 실시하고 사업보고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장은 비교과과정 운영위원회 규정 제 6조에 따라 해당 차년도 1월에 비교과 (프로그램) 인증제를 통해 환류를 반영한 차년도 연간계획서를 1월 중으로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각 호 관련 환류 등 체계(PDCA)를 구축하여 운영하되, 성과관리센터의 심의 절차 등을 거쳐 확정,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